

[사 건 명] 행심 2018 - 1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5일(1시간씩) 등』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2017년 2학기에 발생한 같은 학교 같은 반 ◆◆◆, □□□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2018. 2.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과 □□□, ◆◆◆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일(1시간씩),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4시간) 처분 조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8. 3.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등 시비를 건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쌍둥이 □□□, ◆◆◆ 형제에게 지속적, 일방적으로 욕설과 괴롭힘을 당해 왔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등 시비를 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학생의 진술서, 담임선생님 진술서, □□□, ◆◆◆ 학생의 진술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먼저 어깨로 친구들의 어깨를 부딪치며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학을 온 직후부터 친구들에게 욕을 하며 위협한 물건으로 위협을 하고 담임교사에게도 욕설을 하고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을 하는 등 과잉행동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클래스 상담을 하도록 하였고,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우울증 약 복용 후 차분해졌다.

라.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본교 전입 이후 과잉 행동을 보이다가 친구들 간에 다툼이 생긴 것으로 보아, 친구들이 청구인을 괴롭혀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청구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치를 한 단계 낮추어 조치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및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7. 2학기부터 청구인이 ◆◆◆에게 계속 달라붙으면서 시비를 걸어 싸운 적이 있다. 청구인이 칠판에 ‘병신 ◆◆◆, □□□’이라고

써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자, 청구인은 '그냥'이라고 말하였다.

나. 2017. 11.경 청구인이 △△학생에게 '□□□이 △△이를 왕따 시킨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청구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을 밀면서 발로 찼다. 이에 □□□도 청구인의 얼굴을 때렸다.

다. 2018. 1. 29. 급식실에서 ◆◆◆이 실수로 청구인과 부딪쳤는데, ◆◆◆이 청구인에게 바로 사과했으나 청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라. 2018. 2. 초경 쌍둥이인 □□□, ◆◆◆이 청구인을 때린 사건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동안 발생했던 폭력상황을 모두 포함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격리조치를 요청 하였다. 이에 쌍둥이 □□□, ◆◆◆도 청구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전학 온 직후부터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고 담임교사에게 욕설하는 등 과잉행동을 보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클래스 상담을 받게 하고,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우울증 약 복용 후 차분해졌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청구인이 □□□, ◆◆◆ 욕을 칠판에 쓰고, 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을 발로 찬 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 2.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낮음

(1점), 반성정도 낮음(3점), 화해정도 없음(4점)으로 판단하였다(합계 9 점). 이는 4호 사회봉사 처분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소아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감경하여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하였다. 이와 함께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하여, □□ □, ◆◆◆과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만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으로 처분 조치하였는데, 피해학생 진술, 목격 진술, 담임교사 진술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과잉행동 증세로 피해학생의 학교 폭력을 유발한 측면이 인정되고, 청구인 또한 피해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소아우울증을 앓고 있기는 하나 쌍방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타당하고, 그밖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다.

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